

■ 최신 법령 ■

[상법] 상법 일부개정안

정철 변호사 | 강재영 변호사

1. 무기명주식 폐지

무기명주식 제도는 1963년 최초 제정된 상법부터 포함되어 있던 제도로, 지난 4월 29일 국회는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 폐지의 이유

상법 개정의안을 통해 알 수 있는 무기명주식 제도 폐지의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기명주식은 1963년 상법 제정 이래 한차례도 발행된 사례가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무기명주식은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무기명주식을 폐지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현재 위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에 공포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무기명주식의 발행이나 무기명주식으로의 전환이 금지되므로(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상법 시행 이전에 발행된 무기명주식은 기존 상법 규정에 따라 유효합니다), 만일 무기명주식을 발행하거나 무기명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면 해당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다운로드 : 「상법 일부개정법률」